

제목 : 지혜복 교사 복직 입장발표 기자회견

문의 :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010-2956-1917)

공대위 SNS : 트위터 <https://x.com/aschooljustic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마침내 학교로 돌아갑니다

지혜복 교사 복직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6년 9월 9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발언: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베라 (연대시민,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
 - 모이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관리위원회 잡초)
 - 수영 (녹색당 부대표)
 - 지혜복 (A학교 교사)

[기자회견문]

마침내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간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유출시켰고, 피해학생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에 이를 제보하며 해결을 촉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부당한 전보라는 인사보복이었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27일 결국 해임되었다.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노동탄압은 가혹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정근식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인사보복을 철회하기는커녕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음해하고 탄압했다.

오랜 투쟁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2026년 1월 29일 사법부는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2026년 7월 24일에는 부당한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해임 또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처음부터 명백했던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우리는 악전고투를 거듭해야 했다. 그럼에도 지혜복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또 한 번의 ‘A학교 사건’을 막기 위해,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교육당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끌려가고 다친 연대자들에 대한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과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요구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그 오랜 투쟁 끝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제, 지혜복 교사는 자신을 쫓아낸 A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지난 3년, A학교 투쟁은 단지 한 교육노동자가 당한 인사보복 철회를 위한 투쟁, 지혜복 교사 개인의 노동권 회복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A학교 투쟁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학교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이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었다. A학교 투쟁은 학교와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모든 노동자, 학생, 여성, 소수자들의 싸움이었다.

바로 그랬기에, 지혜복 교사는 홀로 싸우지 않았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내란에 맞서 싸운 노동자 민중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웠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시 A학교 교문을 연다.

그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동시에 오늘의 복직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을 동원해 집단연행한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지원을 쟁취해야 한다. A학교 성폭력 문제를 축소 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당사자들을 엄중 징계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쟁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종이에 쓰인 글자에 머물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이다. 성폭력을 말한 피해자가 고립되고, 이를 제보한 노동자가 쫓겨나는 'A학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지혜복이 옳다! 우리가 지혜복이다!

2026년 9월 9일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지혜복 교사 복직과 학교 성평등 문화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 합의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과 지혜복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위(이하 '지 교사 측')는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의 회복, 지혜복교사의 복직과 회복, 연대자들의 상처 회복,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평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과 기본원칙)

- ① 양측은 피해학생과 양육자의 의사·안전·선택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 ② 양측은 지혜복 교사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와 회복,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 및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 ③ 이 합의의 이행은 관계 법령과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르되, 교육청은 합의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제2조(피해학생 및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지원)

가. 이행 확인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양육자 중 희망자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직접 사과하였고, 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나. 후속 조치

- ① 교육청은 피해학생과 양육자에게 교육감의 사과 및 회복 지원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전달한다.
- ② 향후 피해학생 또는 양육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상담·치료 등 당사자가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회복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

제3조(복직 및 안정적인 직무복귀)

- ① 교육청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의 확정(2026.8.11)에 따라 지혜복 교사 및 학교와 협의하여 안정적인 직무 복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② 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장기간의 해임과 소송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
 1. 관련 법령과 복무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연가, 병가, 장기재직휴가 등)의 안내 및 사용의 신속한 지원
 2.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적극적 협조
 3. 직무 적응을 위한 복귀 방안 마련
 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문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제4조(미지급 보수의 소급 지급)

- ① 교육청은 해임 처분 취소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직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봉급, 호봉 승급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한다.
- ② 교육청은 구체적인 지급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 지급 일정 및 이의신청 방법을 지혜복 교사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 ③ 지혜복 교사는 제2항의 서면 안내를 받은 이후 의견 또는 이의를 제출할 수 있고, 교육청은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수 산정에 반영한다. 지급 이후 누락 또는 산정 오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보수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제5조(공식 사과·피해의 회복)

- ①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 이후 공익신고자로 적시에 인정·보호받지 못하고, 전보·해임 및 관련 분쟁의 장기화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겪은 데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 ② 교육청은 공익신고로 발생한 치료비와 쟁송비용 등에 관한 구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관련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③ 교육청은 지혜복교사의 공익신고자보호법 29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상 권리 행사를 존중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취지에 따른다.

제6조(조사·평가 및 책임에 따른 조치)

- ① 교육청은 별도의 조사·평가 TF를 구성하여 A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과정,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와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한다.
- ② 조사·평가 TF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판결문 참조 및 지혜복 교사의 자료 제출의 기회를 보장한다.
- ③ 교육청은 조사·평가 결과 확인된 문제점과 책임 소재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적의 조치를 실시한다.
- ④ 교육청은 조사·평가 결과를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절차, 불이익 조치 예방, 부당 전보 방지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한다.
- ⑤ 교육청은 합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평가를 마무리한다. 단, 상급기관 감사가 시행되는 경우, 내부 조치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됨은 상호 인정한다.

제7조(집단연행 연대자에 대한 사과와 조치)

- ①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와 권리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연대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은 데 대하여 사과한다.
- ② 공대위는 경찰 연행과 관련된 치료비 등 연대자 개인별 손해에 대해 교육청 예산을 통한 회복 지원 및 배상을 요구하였고, 교육청은 현행 법령과 예산제도 아래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배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측은 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8조(학교 성폭력 대응체계 및 성평등교육 개선)

- ① 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서울교육 학교 성인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및 성평등 관련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② 교육청은 피해자의 권리와 사안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료를 마련하고, 피해자 사후 상담, 맞춤형 회복 지원, 가해자 교육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③ 교육청은 평등과 존중에 기반한 학생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성인지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④ 교육청은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및 성사안 처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성평등위원회 산하에 여성단체, 교원노조·교직단체, 전문가,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협의체를 운영한다. 공대위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천 1인의 협의체 참여를 보장한다.

⑤ 협의체는 학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관련 제도·매뉴얼 개선 등을 논의하고 교육청에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제9조(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개선)

① 교육청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전부터 살피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불이익 조치 예방, 보호 절차 강화 등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청은 공익신고를 하였거나 본인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적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공익신고자로 우선 추정하여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본 조치를 2027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교원 전보제도 개선)

① 교육청은 교원단체, 교과 전문가,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지혜복 교사 또는 그 추천자가 참여하는 전보 제도 개선 기구에서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 의견 수렴, 교육지원청 간 협의, 전반적인 제도 검토, 모의 배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11조(합의 이행 및 상호 협력)

① 양측은 제1조(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라 본 합의를 이행하며,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다.

② 지 교사 측은 본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 농성을 종료하고, 지 교사 측이 설치·관리하는 현수막·천막 및 관련 물품을 정리한다.(신청사 9월 11일, 종로청사 9월 18일) 양측은 농성 종료와 관련 물품의 정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

제12조(효력 및 보관)

- ① 이 합의서는 양측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지혜복교사 및 공대위 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감

지혜복

성명: 정 리 식
(서명) 

성명: 지 혜 복
(서명)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성명: 백 종 성
(서명) 

성명: 최 은 경
(서명) 